

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8. 6. 1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○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○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용어개정(안 제2조제9호)

3. 입법예고 : 입법예고 불필요

4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9호중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 ~ 8호 생략</p> <p>9. 어린이라함은 <u>국민학교</u>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.</p> <p>10 ~ 12호 생략</p>	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----- -----</p> <p>1 ~ 8호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9. 어린이라함은 <u>초등학교</u>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.</p> <p>10 ~ 12호 <u>현행과 같음</u></p>	